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39호
2023. 12. 29.(금)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8982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8983호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8984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8985호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11
제8986호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4
제8987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8988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8989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8990호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8991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8992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8993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31
제8994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8995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46
제8996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8997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50
제8998호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3
제8999호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56
제900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9001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900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9003호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9004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9005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9006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9007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제900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9009호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9010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9011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9012호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제901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9014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9015호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9016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9017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9018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901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902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9021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9022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9023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902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9025호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제9026호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101
제9027호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9028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9029호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9030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제9031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9032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115
제9033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9034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9035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제9036호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제9037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7
제9038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제9039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9040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4
제9041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제9042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9
제9043호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제9044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제9045호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5
제9046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156
제9047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9048호	서울특별시 결린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	159
제9049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61
제9050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4
제905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5
제905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67
제9053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70
제9054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2
제9055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3
제9056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5
제9057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78
제9058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제9059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4
제906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	185
제9061호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189
제9062호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195
제9063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7
제9064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9
제9065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
제9066호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
제906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
제9068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3
제9069호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04
제9070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5
제9071호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206
제9072호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8
제9073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9
제9074호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12
제9075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14
제9076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5
제907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17
제907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9
제9079호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22

제9080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4
--------	-------------------------------------	-----

[규 칙]

제460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25
제460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37
제4606호	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245
제4607호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	253

[훈 령]

제1053호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254
--------	----------------------	-----

[입법예고]

제2023-362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70
제2023-362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74

◆ 구 고 시

제2023-181호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토지보상)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초구)	277
------------	--	-----

◆ 정 정

제898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정)	280
--------	---	-----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982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이 되고”를 “정책기획관이 맡고”로, “자가 된다”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소속 업무관련 4급 이상 공무원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임기가 없는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
 - 안전 발생시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 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책기획관으로 하향하고, 위원 자격 규정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983호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제8조에 따른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설치 등)”을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문)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성평등위원회는 이에 응한다.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12조(중전의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12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제9조에 규정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포괄적 기능의 ‘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함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성평등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설치 조항을 성인지 예산 관련 사항 ‘자문’ 조항으로 개정
- 나.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설치 관련 조항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8984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9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를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당을” 을 “수당 및 여비를” 로, “있으며,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를 “있다” 로 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제7조제4항” 을 “제8조제4항” 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2호 관련)

1. 브랜드

(1) 영문 기본형



(2) 국문 기본형



2. 브랜드의 의미

(1) 영문 타이포 디자인을 중심으로 서울에 대한 다양한 마음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메타포(metaphor,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은유)를 이미지화(픽토그램)함

-  (LOVE) : 서울을 향한 마음이 모여 사랑으로 가득 찬 서울
-  (INSPIRE) : 다채롭고 새로운 경험을 주는 도시 서울
-  (FUN) : 즐겁고 매력으로 가득한 매력 도시 서울

(2)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매력 있는 도시 서울을 상징

3. 색상

BLUE
RGB R0 G130 B255
HEX 0082ff
CMYK C90 M20 Y0 K0
Pantone 2174C

GREEN
RGB R0 G215 B120
HEX 00d778
CMYK C70 M0 Y70 K0
Pantone 7479C

YELLOW
RGB R255 G160 B0
HEX fabf13
CMYK C0 M30 Y90 K0
Pantone 7548C

PINK
RGB R255 G10 B115
HEX ff0a73
CMYK C0 M90 Y27 K0
Pantone 2039C

4. 연혁

구 분	선정 연도
	2002
	2006
	2008
	2015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을 대표할 새로운 브랜드가 선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브랜드를 교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 브랜드 변경 (별표2)
 - 조례 개정으로 신규 서울브랜드를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나.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 (제5조제4항)
 -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 24.12.31)을 5년 연장(' 29.12.31)하여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브랜드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 지속 수행
- 다. 서울브랜드총괄관 여비 규정 마련 (제6조제7항)
 - 서울브랜드총괄관의 국내외 활동에 따른 여비 지급 근거 규정 마련

◆ 서울특별시조례 제8985호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맡는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전문분야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⑧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3.7.10)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제2조)
- 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제3조)
- 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제4조)
- 라.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 마.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86호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3.7.1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회가 출범 예정인바,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분권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987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경제정책과장”을 “창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을 “(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을 “(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경제정책과장”을 “창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안전”을 “안전 심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금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해 소관사항과 고유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부서로 운용 주체를 이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관리공무원(제7조)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제9조)을 ‘경제정책과장’에서 ‘창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의 운용 부서를 이전
- 나. 기타 조문의 문구와 어휘를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8988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홀로 사는” 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으로, “혼자 임종” 을 “임종”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실태조사의” 를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나이, 장애여부·유형, 거주 형태를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실시” 로 한다.

제7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 을 “제3항” 으로 한다.

12.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여부·유형, 거주형태 등 시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지원 거부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 유도사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으로립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비 (제2조)
- 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 추가 (제7조)
- 다. ‘사회적으로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조항 신설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89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1조의2 중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주차구획의 크기·높이·기울기·재질
2. 바닥면·주차구획선의 장애인전용표시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제25조의3제1항 중 “100면”을 “50면”으로 한다.

제25조의4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에는 별도 5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도 6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5호의 설치기준란 중 “원룸형”을 “소형 주택”으로 한다.

별도 1 및 별도 2를 각각 삭제하고, 별도 5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도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요금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8,0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 개별주차장 1일 주차요금은 1시간 환산요금의 6배를 적용하며,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비고>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8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간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간을 발행할 수 있다.

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 시스템(주차요금결제에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관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8.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9.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간은 주차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요금은 노외주차장 월 정기간 요금을 따른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 4. (생략)	(현행과 같음)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u>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주택</u>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10. (생략)	(현행과 같음)

<별도 5>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제25조의5제4항 관련)



<별도 6>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제25조의5제4항 관련)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1일 주차요금 신설로 장시간 주차장 이용 시민에게 과도한 주차요금의 부과 방지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
- 국가보훈부의 요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일상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대
-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치시켜 시민 혼선 예방
 -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명칭 변경
-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
 -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22.3.3. 제정)

2.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 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조문 정비
- 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조문 통일
- 마.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명칭 개정
- 바. 조문 내용 중 관련 조례 명칭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8990호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 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이 경우 해당 지역이나 해당 노동자계층에 대한 용자 또는 보조 포함)
 -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 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 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2022. 12. 30.)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이 추가(제5조제1호 신설)됨에 따라, 용자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례 제6조에 위 제5조제1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대상에 조례 제5조제1호의 사업(「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추가(제6조제1항제1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991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나) 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매체비용 별도)란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나) 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매체비용 별도)	1GB마다	8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21. 6. 23. 개정, 2021. 12. 23. 시행)에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제1호다목 중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나) 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의 복제 수수료를 현행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00MB마다 2,500원을 1GB마다 800원으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992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공무원 “” 을 “공무원” 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 를 “회피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7조 중 “둘 수 있다” 를 “둔다” 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건축물미술작품” 을 “건축물 미술작품”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제2항” 을 “제20조제3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물미술작품” 을 “건축물 미술작품” 으로, “교체” 를 “교체, 철거” 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착공신고 시” 를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 을 “제3항과 제4항” 으로,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를 “건축주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이전·변경·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변경·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건축물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금의 출연절차 등)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기금출연계획서를 시장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기금 출연확인서에 따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이”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주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기관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30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관리대장”을 “관리총괄표”로 한다.

3.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개정(' 22.7.19.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철거”를 추가하여 노후화된 작품 또는 안전의 문제가 있는 작품 등에 대해 철거 조치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함(제18조)
- 나. 건축주의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제출 시기를 “착공신고 시”에서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로 변경하여 심의 신청 시기를 구체화함(제19조제3항)
- 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제19조제6항)
- 라. 건축물의 설계변경 등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변동될 경우 그 차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절차를 보완함(제19조2)
- 마. 건축물 미술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공모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제20조)
- 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은 위촉기간 중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참여 금지 규정을 신설함(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명이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관리청란 중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을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 시험의 처리기간을 연장” 을 “시험의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 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민소통기획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갈등관리 협치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9호 중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1회에 한한다”를 “한 차례만 한다”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조직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한하여”를 “제2호는”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차례에 한하여”를 “차례만”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때에 한하여”를 “때에”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을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하며, 별표 2 중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교통정보과가”를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미래첨단교통과가,”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4호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을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한하여” 를 “경우에만” 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차례에 한하여” 를 “차례만”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5조” 를 “제6조”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을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을 “동물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을 “동물정보시스템”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9조” 를 “제6조” 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 를 각각 “제6조” 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17호” 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1차례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차례에 한하여” 를 “차례만” 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한하여” 를 “경우에만” 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차례에 한하여” 를 “차례까지만” 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사람에 한하여”를 “사람에게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자에 한하여”를 “사람만이”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허용하되, 1회에 한하여”를 “허용하되,”로, “연장”을 “한 차례만 연장”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관리청에서는”을 “관리청은”으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 을 “시행규칙 제73조의8” 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1차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다목 중 “방법에 한하여”를 “방법으로만”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방법에 한하여”를 “방법으로만”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판매시설에 한하여”를 “판매시설만 가능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현수막에 한하여”를 “현수막만을”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안에 한하여”를 “안에서만”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내용에 한하여”를 “내용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자에 한하여”를 “자에게만”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우에 한하여” 를 “경우에만” 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과장” 을 “자원회수시설과장” 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을 “치수안전과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장” 을 “재난안전정책과장” 으로, “안전총괄과의” 를 “재난안전정책과의” 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회에 한하여” 를 “두 차례까지만” 으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전단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차레에 한하여” 를 “차레만” 으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1차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

제87조(「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하여” 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으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9항”으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선박의 기준및이용료의 비고란 제1호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를 “협의하여”로, “일시”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자에 한하여”를 “자에게만”으로 한다.

제104조(「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람에 한하여”를 “사람에게만”으로 한다.

제105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6조(「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7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8조(「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우리시 조례 내 일본어 투 표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본어 투 표현 "한하여" 정비
- 나.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다.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기관)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라. 그 외 경미한 오기 정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8994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8517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부칙 제1조 중 “2024년 1월 1일” 을 “2024년 6월 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방송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민간주도의 언론으로 독립경영 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2024.1.1.부터 시행 예정임
- 그러나 조례 시행 시기가 도래함에도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제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일로 5개월 유예함(부칙 제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95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 및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아침밥”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
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와 홍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침밥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나.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아침밥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96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소상공인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전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2023.3.27.)됨에 따라 소속 분과위원회인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도 폐지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내용 중 '소상공인 지원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가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된 부분을, '필요 시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 나.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6조의2)
-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6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8997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제조”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산업 동향 및 전망
 4. 육성 및 지원 시책
 5. 전문인력 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국내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사용·재제조·재활용 관련 연구·개발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4. 세미나·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유치·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개발)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시에서는 23년 전기차 약 2만 2천여 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26년까지는 전기차 4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전기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배출량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를 통한 친환경·탄소중립 도시를 건인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 (제4조)
다.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라.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연구개발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98호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심 고시원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시원”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4호거목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을 말한다.
2. “안심 고시원 인증”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이하 “인증 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한 고시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심 고시원”이란 제2호에 따라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고시원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고시원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 안심 고시원 인증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시원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고시원으로 한다.

제5조(안심 고시원 인증)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고시원에 대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

1. 안심 고시원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고시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 대상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시원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심 고시원에 대한 건축개조 비용
2. 안심 고시원에 대한 냉·난방 비용
3. 그 밖에 안심 고시원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7조(인증의 유효 기간)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 기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해당 고시원에 대한 재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2호에 따른 절차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제8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심 고시원 인증 후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부도, 영업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관외로 이전한 경우

② 시장은 안심 고시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 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 ①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안심 고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안심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안심 고시원의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 권고) 시장 및 관할 구청장은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안심 고시원에 대하여 그 운영자에게 인증 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주방·세탁실 등 공용시설 등이 확보된 민간 소유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하고, 고시원 운영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하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사업 대상을 규정함(제4조)
- 라.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규정함(제5조)
- 마. 안심 고시원 비용 지원, 유효 기간, 취소를 규정함(제6조~제8조)
- 바. 안심 고시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시정 권고를 규정함(제9조~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999호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전문 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3. 서울특별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방안 마련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원
2.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
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제작·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 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기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정 신청)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시장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정 고시와 통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 효력) ① 제11조에 따른 지정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지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및 홍보 촉진 활동
2.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표창) 시장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울시 관광산업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 조례안의 지원범위를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으로 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에 관해 규정함 (제3조)
-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및 제5조)
- 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에서 제8조)
- 마.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입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범위를 서울시 관광기념품으로 한정함 (제9조 및 제10조)
- 바.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평가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 및 제12조)
- 사.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 및 고시와 통지, 지정 효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13조에서 제15조)
- 아. 관광기념품 사후관리 및 지정 해제에 관해 규정함 (제16조 및 제17조)
- 자.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8조)
- 차.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 (제19조)
- 카.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0조)
- 타. 사무의 위탁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함 (제21조 및 제2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0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장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동물보호법 상 규정된 맹견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 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공원 등 7개소로 한정되어 있어, 타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인의 출입 공간에 대한 별도 조항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가. 맹견의 출입금지 등 조항상 다수인의 피해방지 조항 신설함 (제7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9001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초선의원은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임기개시전까지 의회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개시 직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특성상 의정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2023.9.14.).
- 이에 개정안은 의원당선인을 기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초선 의원이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회의실습 등 의정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의원당선인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의 적용범위에 포함함(제2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0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중 제3호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중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7조제1항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03호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4항의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이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이 법제화 됨에 따라, 서울시장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시행 예정인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자원화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조제4항).
- 나. 시장은 구청장이 그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4항의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3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04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큐레이터 사업은 수혜를 누리는 시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종료된 사업임.
- 그러나 현행 조례의 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 사항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와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간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음.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행 사업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립미술관 사업 현행화에 따라 종료된 사업을 삭제함(제36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05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료 구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할 수 없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문화재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제4조의2(자료 기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 자료를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문화재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기탁받을 자료가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2016년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외에도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어 이들 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동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동 조례는 건립 추진 중인 박물관의 전시자료 수집 근거와 전시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박물관 자료 수집에 있어 필요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이에 자료 구입 및 기증자료 수증에 있어 필요한 제한사항을 명시해 유물 등 소장품 확보에 있어 가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자료 구입의 제한 사항에 대해 신설함(제3조의2).
- 나. 박물관 기증 자료 수증의 제한 사항에 대해 신설함(제4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006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3.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식품위생법」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소상공인 포함)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7의2.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K콘텐츠의 전세계적인 흥행으로 서울시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서울시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최근 기존의 알려진 관광 명소보다 현지의 생활과 일상 공간에 대한 체험 관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SNS의 발달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식문화 등으로 서울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 시 「식품위생법」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서울시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 시 「식품위생법」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소상공인 포함(제8조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07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50퍼센트” 를 “100퍼센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상향함으로써 자치구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서울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안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제3조제1항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0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시민”을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 등 시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민의 문화향유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의 권리임.
- 이에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미혼남녀가 문화 향유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문화향수 및 창의력증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조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09호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7조4항 신설)
-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 하도록 함(제11조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10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설치비”를 “설치비,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내용으로 IT·소프트웨어기자재 관련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IT·소프트웨어 대응 인력 양성에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내용으로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을 추가함(제11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11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험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다만, 시험으로 시료가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되는 등 손상을 입은 것은 책임지지 않으며, 반환에 드는 비용은 반환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품질검사 의뢰서

시험·검사종목	(*)		
시 료 명			
시 료 량	(채취일 : . .)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시료 채취 장소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료채취 입회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험 및 시방기준			
성과 이용 목적			
공사 개요	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발 주 자			
시 공 자			
국가중요시설 여부			
시험후 시료 반환여부	☐ 반환 요청 (비용 본인부담, 시험결과 통보후 7일 경과시 폐기) ☐ 반환 필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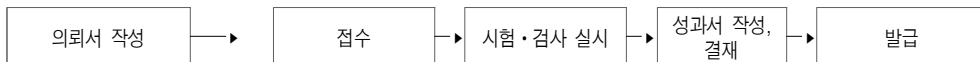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kW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kW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절 취 선

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는 품질검사 시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품질시험소의 시료 보관 장소에 대한 공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시험 후 시료의 반환 여부와 보관 일수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인 「품질검사 의뢰서」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품질검사 의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료를 반환하도록 하되, 그 시료가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되는 등 손상을 입은 것은 시험소장이 책임지지 않으며, 그 비용은 반환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제4조제2항).
- 나. 「품질검사 의뢰서」에 시료의 반환 요청 여부 항목을 추가하면서 반환 비용의 주체와 보관 일수 등을 명시함(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서울특별시조례 제9012호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선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해 오고 있음.
- 그러나 강소기업의 선정 시에만 선정기준, 선정 방법, 지원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을 뿐, 선정 취소 시에는 그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이는 강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취업 또는 사업 연계 등을 도모하는 청년 및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소기업 선정 기본 취지에 반하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선정 취소 시에도 그 사유 및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강소기업 선정의 기본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강소기업의 선정 취소 시에도 그 사실과 사유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제14조 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1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중 “부지경계선으로부터”를 “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부지경계선과 면제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함.(제34조제1항제8호)
- 나.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봄.(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14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로 한다.

[별표 3] 2. 중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 굴착 및 복구공사”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통편(SMCS 118500 굴착 및 복구공사)”로 한다.

[별표 3] 8. 중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도로포장 통합지침(국토교통부)”로 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공통공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16년 6월 국가건설기준 내용 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토교통부 건설기준 코드가 통합 제정되었고,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상위기준 코드화로 인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가 전면 개정되었음.
- 개정된 국토교통부 지침 및 서울시 전문시방서 규정과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참고하는 서울시 기준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통편(SMCS 118500 굴착 및 복구공사)’ 으로 한다. (별표3제2호)
- 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참고하는 국토교통부 기준은 ‘도로포장 통합지침’ 으로 한다. (별표3제8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15호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을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으로, “점검할 수 있다” 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소음·진동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수시점검 부분이 2023년 6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운행차의 소음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 (제14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16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법 제7조제6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법 제9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전단 중 “준치관리구역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치관리구역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적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일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명과 조문번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을 제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함.(제2조의2제1항)
- 나. 제5조제1항제13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개정(제5조제1항제13호 개정).
- 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를 제11조로 개정함(제5조제2항1호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017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를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를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은 「병역법」”을 “함은 「병역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출자·출연기관에게”를 “출자·출연 기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함.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18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안전한 환경의 유지·관리 등)”을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사항을”을 “사항과 응급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을 참여인원수에 따라 배치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가 미비하여 시설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
- 또한 체육활동 중에 체육시설 이용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제4조의2제1항)
- 나. 시장, 수탁자 또는 사무를 위임받는 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사전 공지하도록 함. (제4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1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5. “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제9조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를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를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호사목 중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30명이상”을 “30명 이상”으로 한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적합성과 완결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함.(제20조제1항제6호)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함.(제20조제1항제1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2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6조제5항제14호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46조 중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적합성과 완결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함.(제36조제1항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21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및 데이터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빅데이터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지속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빅데이터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제9조제7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022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로당·어린이집·작은도서관의 세대규모별 면적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필수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당	- 150 ~ 300세대 미만 : 99㎡이상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725㎡이상 - 2,000세대 이상 : 725㎡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이상
어린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725㎡이상 - 2,000세대 이상 : 725㎡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이상
작은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 ~ 2,000세대 미만 : 298㎡이상 - 2,000세대 이상 : 298㎡에 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 인구는 나날이 증가세에 있고,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2014년에 마련된 필수공동시설 중 경로당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 상황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 또한, 최근 2,000세대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을 다수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필수공동시설 면적 기준은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세대 수에 따라 필수공동시설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로당의 세대규모별 면적기준을 상향하고, 각 필수시설마다 2,000세대 이상 규모에서 적용하는 면적 기준을 신설함(별표 1).

◆ 서울특별시조례 제9023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5”로 한다.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및 환경 위해 기능이 있는 폐기물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 자치구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7조제1항).
- 나. 구청장의 폐기물에 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함(제7조제2항).
- 다. 市의 성과관리, 자료요구, 시정조치 등 규정을 통해 市의 구체적 권한을 명시함(제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2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완화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25호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환경”을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자연환경”으로, “그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조례에서 “처리시설”이란”을 “조례에서 사용하는 “처리시설”이란”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2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각각 “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매립가스처리시설”을 “매립가스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매립가스 처리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을 “매립가스 처리시설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추가함(제1조)
- 나. 용어 약칭이 생략돼 있어 이를 정비함(제3조)
- 다. 위탁기관 규정 각 호 부분을 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함(제3조 각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26호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기후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후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지표 및 감축효과, 감축방안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기후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후예산서·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후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기후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기후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예산의 개요
2. 기후예산의 규모
3.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효과분석
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후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후예산 사업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산제 운영 성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후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의 기후예산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예산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후 예산제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교육과정의 운영) 시장은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기후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이 기후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시장은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후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기후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예산제(감축, 배출, 혼합, 중립) 운영을 통해 예산 및 사업의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결산 단계에서 예산의 집행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예산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 근거한 기후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함(제3조)
- 다.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예·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함(제4조)
- 라.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
- 마. 기후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을 위해 기후예산제의 운영 성과 평가, 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함(제6조)
-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 사. 시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아.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1조)
- 자.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또는 지원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함(제12조)
- 차.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사업의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제13조)
- 카. 기후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예·결산서의 평가·분석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27호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을 “포상”에서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효행우수자 등
 2. 9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효행 문화의 확산·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장수노인 지원) ① 시장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인 장수노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90세 이상 어르신 등 나이 드신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 등을 표창하여 부양가족을 격려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행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효행에 대한 표창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매년 표창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나. 100세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28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판매상품의 공정 가격을 준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4. 행사장 안전 관리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사회적 논란을 촉발해 온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를 본보기 삼아 지역 축제 전반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역축제의 계획, 준비,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실·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하여 건강한 지역축제를 육성·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축제위원회의 자문내용에 “축제 판매상품 가격안정화에 관한 사항” 추가(제6조제11호)
- 나. 서울시 지원을 받는 축제에 대해 “판매상품의 공정가격 준수” 의무 부여(제16조제2항)
- 다. 축제 평가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규정(제18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29호**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표창) ①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옥상녹화 조성지역 중 유지관리가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후위기에 따라 도심 내 녹지 확보와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옥상녹화지를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거나,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1항)
- 나.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30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를 “예산정책위원회” 로 한다.

제2조 중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를 “예산정책위원회” 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의2 제목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를 “(예산정책위원회)” 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를 “예산정책위원회” 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반영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또한, 위원회의 활동에 현장 방문 등을 추가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재정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조 제목을 '자료제출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를 “예산정책위원회” 로 변경함(제명, 제1조 및 제2조, 부칙 제2조)
- 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방문 기능을 추가하고, 자료제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 제목을 ‘자료제출 등’ 으로 변경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31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 을 “표지판”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별도(別圖)” 를 “별표” 로, “제한표지판 중 하나 이상” 을 “제한표지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도를 별표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설치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부터 적용한다.

[별표]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제3조제3항관련)



바탕 : 청색

원형 및 사선 : 적색

바탕 : 백색

글씨 : 흑색

테 : 백색

픽토그램(연기)

테 : 흑색

바탕 : 백색

픽토그램(차) : 흑색

글씨 : 백색

글씨 : 회색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하도록 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은 3가지(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로 나뉘어 있어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장소를 인지하고 제한에 호응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또한 규제, 지시표지판은 의무 설치인 데 반해 보조표지판은 재량설치로 규정되어 보조 표지판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 제기되기도 함.
- 이런 근거로 3가지 표지판을 하나로 통일하는 동시에 가시성을 높인 새로운 단일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별도” 를 “별표” 로 수정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규정함(제3조제3항 및 제4항).
- 나. “별도” 를 “별표” 로 하고, 별표 표지판 디자인을 수정함(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9032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

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자치구,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시와 자치구 등의 효율적인 자원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시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10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자치구의 집행계획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자치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시장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자치구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① 시장은 징수교부금을 제1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자치구,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매년 구청장 등으로부터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한다.

제14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법 제36조제8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제3항 각 호의 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은 제1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시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환경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자치구 청소행정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⑤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의 시 위촉 또는 임명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해임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활용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자금 융자 등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운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시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자치구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

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게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은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법제상·행정상 조치 등)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생산·소비·유통·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2. 12. 31.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부칙에 따라 2024. 1. 1.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
- 나.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순환원료’의 의미를 규정하여 정확히 하고, ‘순환이용’ 활동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함(제2조)
- 다.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문화가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시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제7조 신설)
- 라.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등 폐기물 발생 이후 지표뿐만 아니라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고 시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등을 명시(제9조 신설)
- 마. 순환경제사회 발전 시설 설치·운영, 연구·개발, 산업 육성, 순환자원 사용 사업 등에 자금 융자 및 융자 자금으로 재활용육성자금 등 활용 근거 마련(제20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033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

제3조제1항제8호 중 “생존” 을 “일상생활” 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지원” 을 “지원 등 에너지복지 추진”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제25조제2항 중 “감축” 을 “감축, 에너지복지” 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제29조제1항 중 “확대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을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복지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발·이용·보급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을 “개발·이용·보급,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복지”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로, “기후변화기금” 을 “기후대응기금”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예기치 못한 폭염, 수해, 한파 등 기후 위기로 인하여 더욱 큰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보장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까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관련 시책 수립·계획 시행·사업 추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이념에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제10호 신설).
- 나. 에너지계획에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2항제4호).
- 다. 에너지정책위원회 자문 사항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제1항제7호 신설).
- 라. 포상 대상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5조제2항)
- 마. 에너지복지 사업에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7조제1항제4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034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를 “의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사용기간 갱신과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용기간 갱신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35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8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일자리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제9조의2)
-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1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36호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목” 을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보호수로 지정하는 일반적인 노목, 거목, 희귀목 등에 한정하지 않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함(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37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친선결연 등의 의결)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호 노력 의무만을 내용으로 하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결연의 취소)” 를 “(친선결연 등의 취소)” 로 하고, 같은 조 중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을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시, 해당 도시의 국제적 위상과 교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친선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구분하여 교류협력을 진행하면서 친선도시 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왔음.
- 그러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동의를 받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세부적 내용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결연취소 대상에 우호협력협정을 추가함.

2. 주요내용

- 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세부적 내용 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을 포함하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제7조).
- 나. 결연취소 대상에 우호협력협정을 추가하고 문구를 정비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38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조(중전의 제2조) 제1항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5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해체공사장 등의 경우 용접·용단 작업 등 다양한 화재 발생 요인들이 존재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에서 관련 사항을 알 수 없어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및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으로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을 갖는 각각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해체공사장 등에서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신설함.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39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를 “학계·법조계·언론계”로, “행동강령”을 “윤리·행동강령”으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를 “공정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을 “정당의 당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회피)”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로 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 · 단서 및 제3호 본문 ·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 ·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 ·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

- 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정계 심사 전 의무적 절차이고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사실상 의결에 구속력이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자문위 구성 시 민간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위원회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2023.7.28.)
- 또한,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 및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됨.
-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정성 및 중립성이 강화되도록 자문위의 구성·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위해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 － 위원회 위원에서 공무원, 정당의 당원, 의원을 제외함(제22조).
 -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정비(제24조)
-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개정(별표 1).

◆ 서울특별시조례 제9040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폭언·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 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2.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4.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7조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대중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 문화예술인’,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등을 정의함(제2조).
- 나. 서울시장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책무를 명시함(제3조).
- 다.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창의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라.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함(제6조).
- 마.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중도포기자의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41 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 을 “다음 각 호의 지역”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
5.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 이라고 규정된 부분에 반지하, 지대가 낮은 지역 등 구체화 된 예시를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7조제1항에서 신설하고 있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침수방지지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는바, 안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시장이 판단할 때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침수 방지지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침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7조제1항).
- 나. 안 제7조제1항에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지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을 제5호로 신설함(제7조제1항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42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 검사 결과 공개)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을 비롯한 1급 발암물질로 인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자치구청장의 사무이므로, 소관 사무의 원칙에 따라 시장의 사무인 같은 법 제13조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 제13조제1항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제4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043호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2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을 “의장”으로,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자 증명서”를 “대표자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자치구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

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 을 “별지 제8호서식” 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을 “주민조례발안 관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 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 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이용신청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대표자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청구 · []철회 ·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 °°자치구 °°동(총○○권 중 제○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 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성지 80g/㎡]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4년 2월 17일 시행예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도 및 별지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체계를 반영하여 청구인명부를 구분하여 제출토록 하고, 일부 경미한 오기 등을 수정하여 법령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등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2조제1항)
- 나. 선정대표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다.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제3항 신설)
- 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체계를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오류 사항을 수정함(제7조제2항)
- 마.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의2 신설)
- 바.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시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에 청구권 확인사무와 교육·홍보·지원 등의 사무를 추가 규정함(제12조)
- 사. 법령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수정함(제12조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44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다자녀가족”이란 을 “다자녀 가족”이란 으로 하고, “가족을”을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다자녀가족(다만, 막내가 18세 이하)”을 “다자녀 가족”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1호 중 “다자녀가정”을 “다자녀 가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그치는 등 심화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
- 이에 “다자녀 가족”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 가족”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의함 (제2조제2호).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제2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045호**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가족을” 을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그치는 등 심화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
- 이에 “다자녀 가족”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출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 가족” 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의함 (제2조제2호).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제2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046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영유아”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난 8월 8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였음.
- 이에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영유아”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영유아” 용어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던 것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047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체력저하와 비만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음. 체력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체력 및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근거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력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제16조제9호)
- 나. 현재 제9호를 제10호로 함(제16조제10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48호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결련택견이 지닌 민간 무예 문화로서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련택견”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무예로서의 특수성을 내포하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고시된 공동체 종목으로서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 문화를 말한다.
2. “결련택견 전승공동체”란 서울시에 소재하고 택견을 전승·보급·발전시키기 위한 단체나 개인을 말하며,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기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결련택견이 서울의 고유한 무예 문화인 택견 경기의 장으로 대중화되고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써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결련택견 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결련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결련택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결련택견에 참가하는 택견 선수 및 지도자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결련택견 관련 교육·홍보·축제·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결련택견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사항
 6. 결련택견의 세계화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7. 결련택견의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련택견의 날) ① 시장은 결련택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진흥을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결련택견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결련택건의 지원) ① 시장은 결련택건 전승공동체가 결련택건 관련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련택건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결련택건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결련택건 진흥과 활성화 등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6호 결련택건이 지닌 한민족의 민중집단 문화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서울을 대표하는 무예 시합의 장으로서 대중화 및 세계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결련택건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대중화, 관광 상품화 등 시장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결련택건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함(제4조).
- 다. 결련택건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결련택건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 라. 결련택건 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49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단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자치구별로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단체 활동 지원
 2.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 등 공익활동
 3. 자치구간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치구별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지도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게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존의 자율방범연합회만 지원하던 조례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까지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시장은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자치구별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방범단체에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나.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다. “자율방범단체”,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정의함(제2조).
- 라.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마. 자율방범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바.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
- 사. 부칙에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50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월정수당의 지급액란 중 “4,101,240원” 을 “4,170,96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해서 2024년 1월1일 부터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4,101,240원” 에서 “4,170,960원” 으로 변경함([별표 2])

◆ 서울특별시조례 제905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같은 조례”를 “도시정비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3, 4등급”을 “3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규칙 제2조제2항”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 단서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3장제7절에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9조제1항제6호 중 “3, 4등급”을 “3등급”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심의 위원회”를 각각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9조2제3항”을 “법 제49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49조2제5항”을 “법 제49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49조2

제1항”을 “법 제4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현장지원단 운영) ① 시장과 구청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와의 소통 지원
2. 지역주민 간, 사업주체 간의 갈등 조정
3. 사업에 대한 설명, 상담 및 홍보
4.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구청장이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현장지원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빈집의 등급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함(제3조 및 제49조)
-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삭제함(제21조의2 삭제)
- 다. 주민도 구청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5 신설)
- 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관리지역에서 현장지원단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함(제51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05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경관법」 제7조”를 “「경관법」 제7조”로 한다.

제1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

제30조제3항 본문 중 “법 제101조의5 제2항”을 “법 제101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101조의6 제2항”을 “법 제101조의6제2항”으로, “법 제101조의6 제1항”을 “법 제101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일 이후의 잔여 건축공정률에 개정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다.

제42조제6항제3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73조 본문 중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을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으로, “사업을 포함한다)”를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의”로, “날의”를 “날 당시”로, “미만으로서”를 “미만이고,”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총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은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에 건축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구역의 잔여 건축공정에 해당하는 건축비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잔여 건축공정률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64호)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된 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시공사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7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인수가격 산정을 위하여 건축공정 진행 중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의 건축비 산정 방식을 신설하고, 현행 ‘준공인가’ 뿐만 아니라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시에도 잔금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시기를 조기화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이 총회 의결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시공사 선정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공지원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은 삭제하여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각종 용역업체 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사 선정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제19조제4호 신설)
- 나.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고(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시에도 잔금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제42조제6항제3호).
- 다. 시공사 등의 선정기준 중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함(제77조제1항)
- 라.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사업방식에서 시공사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제77조제8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053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박물관·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육성을 위하여”를 “확충 및 지원·육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를 “법 제5조의3”으로, “서울특별시의”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다”로, “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료제출)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사업”을 “제4조에 따른 경비 보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6조의”를 “법 제16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법 제29조의 그 취소 등”을 “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3항 중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으로, “알려야”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책 강구 방안을 넘어 그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명시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내 명시된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촉 해제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과 예산 수립·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제3조의2).
- 다.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5조의2).
- 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규정함(제6조, 제7조).
- 마.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함(제7조의2,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54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4세”를 “9세”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족돌봄청년이 아픈 가족의 치료 및 간호·간병에 드는 비용이 높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에 간호·간병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현행 조례 상 가족돌봄청년의 나이를 14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지원 연령을 34세 이하로 변경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나, 영·유아를 포함한 저연령아동은 실질적으로 가족돌봄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령 하한을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나이 하한인 9세로 규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사업을 추가함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 나. 가족돌봄청년의 나이 규정을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변경함.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55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인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을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 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

① “유동광고물” 이란 영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을 “불법 유동광고물” 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을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 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시장” 을 “시장·구청장” 으로, “불법광고물” 을 “불법 유동광고물” 로, 실시할 “수” 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로 한다.

제2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유동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시장은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요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벽보, 현수막,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
- 그러나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불법 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 등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또한, 도시기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은 불법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요청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의 제28조 조문 제목인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을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로 변경함(제28조 제목)
- 나.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제28조제1항 신설)
- 다.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4항)
- 라. 시장은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제28조제6항제1호 신설)
- 마. 시장은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제28조제6항제2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056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3세미만” 을 “13세 미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를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으로 한다.

5. “교육시설” 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해당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의 장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어린이보호구역” 을 “어린이 보호구역” 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예상되는” 을 “예상되거나 통학로에서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를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로, “시행주체” 를 “공사 시행주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를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로 한다.

제7조의5제1항제2호 중 “도로교통법 제3조” 를 “법 제4조” 로, “도로교통법 시행” 을 “같은 법 시행”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LED” 를 “발광다이오드(LED)”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

7.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 의한다”를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2.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

3.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

제9조제2항 중 “등에 의한”을 “등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과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기본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시에 그 시설의 어린이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장 의견을 포함토록 하고,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장소에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을 추가하고 교통안전교육 시에 동 내용을 교육토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되고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의 규정을 삭제함(제2조)
- 나.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개선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제4조제4항 신설)
-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해당 교통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의 장 의견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제5조제2항 신설)
- 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에 통학로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을 추가로 규정함(제7조의3)
- 마.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 등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재정지원 사항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을 설치 근거를 규정함.(제7조의5제1항제7호 신설)
- 바.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와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제8조)
- 사. 그 밖에 부정확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수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057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를 “착용하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등을 지켜”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을 “시장은 시민”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가이드라인의 마련)”을“(안전이용기준의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이드라인”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의식개선”을 “의식 개선”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수요가 빠르게 확산하는 반면 어린이 보호, 사업의 종류 등 현행 조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준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 등을 정비함(제2조)
- 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제2호, 제3호)
- 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를 반영함(제3조제2항)
- 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규정함(제3조제4항 신설)
- 마. 안전이용기준 마련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제7조제2항 신설)
- 바. 안전운행, 주차질서 이행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제12조)
- 사.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이용자격 확인 등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제13조)
- 아. 그 밖에 조례의 표현을 수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058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시부터 오전 6시”를 “9시부터 오전 8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 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단서 중 “2년 미만인”을 “5년 미만인”으로,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로, “2일”을 “3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연가일수 중”을 “연가일수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으로, “기간의 공가를”을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참석”을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오염지역,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유산·사산”을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를 “수”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31조 단서 중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별표 4의 기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별표 5의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 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 이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 이후 소속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 21.12.31., ' 23.6.13., ' 23.7.18., ' 23.12.5. 개정되어 관련 조항들을 일괄 정비해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의 출산 장려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치료시술 휴가 일수 확대, 조산(早産) 위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 개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근거 마련 등 미비점을 정비함.
- 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를 조정하고, 심리안정휴가 및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을 반영함.
-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 근무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 시 부여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제한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조 및 제25조).
- 나.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대상 재직기간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산 연가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제20조 및 별표 4).
- 다. 전염병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감염병'으로 개정함(제27조).
- 라. 공가의 내용 중 감염병 예방에 따른 접촉 또는 검사에 따른 공가를 추가하고, 「검역법」상 용어의 개정사항을 정비함(제28조).
- 마. 출산휴가의 대상의 확대(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에서 조산(早産)으로 확대), 난임치료시술휴가의 확대(1일에서 최대 4일), 공무원의 심리안정휴가 신설,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시 휴가일수 확대(10일에서 15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제29조 및 별표5).
- 바.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참석 시 주어지는 공가의 중복 제외를 명확히하고 근무시간 면제에 관해 명시함(제28조 및 제28조의2).
- 사.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에 대해 구체화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제3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59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의원들” 을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동 조례 제3조제3항 중 “의원들” 에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는 등 그 내용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함(제3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6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생태환경과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환관람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강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
2. “순환관람차”란 한강공원 내 노선을 정하여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의 공원 이용시설로서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한강공원을 방문하거나 순환관람차,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동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순환관람차의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출연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순환관람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순환관람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행범위 및 노선) ① 순환관람차의 운행범위는 한강공원 내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한강공원별 위치, 특성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관람차 운행노선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운행시간) ① 순환관람차 운행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순환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 순환관람차 운행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기간

2. 태풍, 폭우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전에 공지한 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 이용자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사상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5. 65세 이상 또는 6세 미만의 사람
 6.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7.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
 8. 순환관람차 시범운영기간,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한강공원 내 공연 및 행사 기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순환관람차의 점검이 필요하여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
2. 출발 전 이용을 철회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안전의무)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의 원활한 운행, 사고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도로, 시설 등을 점검·관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순환관람차 탑승을 거부하거나 이미 탑승한 경우 하차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을 위한 정당한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순환관람차 이용자는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이동약자 편의제공) ① 시장은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순환관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환관람차에 탑승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순환관람차 최대 탑승인원보다 많은 경우 이동약자가 우선 탑승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관람차 운행노선 및 제5조에 따른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환관람차 이용료 범위(제6조제1항 관련)

기준 및 이용료 범위		비 고
* 1회 탑승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인(19세 이상)	500~2,000원 1,000~3,000원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한강공원에 친환경 순환관람차를 도입하여 생태환경 및 시설물과 연계하는 등 관광 활성화 도모
- 한강 개최 축제 및 시설물에 대한 접근편의를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

- 가.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근거, 방식 및 범위 규정(제3조~4조)
- 나. 순환관람차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다.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라.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이용대상 및 이용료 규정(제7조)
- 바.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사. 안전의무,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61호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버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버버스”란 선박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한강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2. “리버버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리버버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입금”이란 리버버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항수입,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4. “지출금”이란 리버버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항지출, 부대사업 지출 등을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지출금이 수입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리버버스 운영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리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대중교통으로서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리버버스 운항에 다양한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선원 및 종사자 등 채용한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의 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감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장 리버버스 운영 및 지원

제5조(리버버스의 노선 및 운영) 시장은 이용 수요, 선착장 설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리버버스 운항노선과 운항시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도선사업 관련 법규의 준수
 2. 제22조에 따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등 확보
 4. 리버버스 홍보 등 리버버스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승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해진 운항노선 및 운항시간을 어기면서 운항하는 행위

제7조(안전운항 증진을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리버버스의 안전한 운항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리버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사업자별 법규위반 현황, 선박사고 및 선박 내 안전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선원 및 종사자가 안전운항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선박 내·외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선박의 연료 용기 상태 점검 등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선박 운항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박의 기능이나 구명장비, 선착장 안내, 요금 결제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원 및 종사자가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선한 경우 가까운 선착장에 하선하도록 할 수 있다.
1. 리버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제8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

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리버버스 사업의 운항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리버버스 운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재정지원 금액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자와 제22조의 협약을 통해 정하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제9조(외부감사) 재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자는 매년 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및 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러 선박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시장은 선령(船齡)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게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의 개방) 시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가 구축·운영·지원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연료공급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 이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금액, 징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위원회 운영 등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8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리버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한강본부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한강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교통·친환경에너지·선박·경제·회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⑩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장 시정요구 등

제18조(사업자에 대한 평가 등)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승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불편사항 개선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시정요구)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평가, 제1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재정지원금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된 경우

2. 사정변경 등에 따라 재정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0조의 시정요구 또는 재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제22조에 따라 체결한 업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2조(업무협약) 시장은 리버버스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한강 수상 대중교통 사업인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 마련
-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 확보,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 및 운영 활성화로 깨끗한 한강 환경 조성에 이바지

2. 주요내용

- 가. 리버버스 운영 관련 시장과 사업자의 권한과 의무
- 나.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 다.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 라. 재정지원 등 주요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마. 시정요구,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 **서울특별시조례 제9062호**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나.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규정함(제4조)
- 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예산 지원을 규정함(제5조)
- 라. 이상동기 범죄 예방 관련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63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사회적 고립청년 기본계획 수립 시 현 고립청년 실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자 기본계획에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 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제8조)
- 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규정함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64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을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9조제3항 중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을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원을 비롯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게 하여 서울시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제31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65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중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법 제7조”를 “「청년기본법」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으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12조제6항 신설).
- 나. 시장으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14조제3항 신설).
- 다. 법제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제21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066호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③ 시장은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구축
3.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치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기반 구축, 조직체계 및 인력구축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청년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자치구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12조)
- 나. 포상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6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지내”를 “대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로, “산식”을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철출입구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가.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times$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나.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times$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2. 지하철출입구등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때, 통로의 설치비용 등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19조의2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하철출입구등을 사유지내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도 도시계획조례 신설하였으나 활성화가 저조하여 보도상에 지하철출입구등 지장물로 인해 보행환경개선이 시급함
- 그러나, 기존 조례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여 출입구 면적 외 연결통로(지하철승강장에서 민간건물 또는 토지내 출입구까지 설치)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지하철출입구등이 민간토지 내에 설치될 때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068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아이돌보미 사업” 을 “아이돌보미 사업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출산가정 등의 양육 현실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돌봄 지원 사업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제6조제1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069호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1.1.에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서울시는 지난 10년 간 사회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서울시 최대 가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이에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서북권을 대표하는 직주락융복합도시로 전면 재조성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혁신파크 운영은 금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서울혁신파크의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동 조례의 폐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서울특별시조례 제9070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혁신적이고 실효성 높은 시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발생하는 운송손실을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071호

서울특별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절수설비에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수도물 절약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도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수도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자치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도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참여를 위한 인식 개선
2.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3. 우수사례 발굴, 수돗물 절약 홍보 물품 지원
4. 가뭄으로 인한 재난상황 예방단계 및 재난상황 시 절수를 위한 옥내 밸브 조정에 따른 밸브 부속품 파손에 대한 복구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제4조)
- 나.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라. 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72호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를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고 불평등 완화를 통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약자동행 정책의 취지와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다차원적인 약자 개념으로 조례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사회이동성 제고와 불평등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을 규정함(제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73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 등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협력사업”을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일문화조성사업”을 “평화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5.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북교류협력”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으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촉진”을 “촉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을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인도적 지원”을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으로 한다.

5. 북한이탈주민 정착·자립 지원 등

제9조제1항 중 “3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남북교류협력”을 각각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2조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3조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북한주민 인권 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있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부서 업무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문에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명시하고 조례명, 기금·위원회 명칭 등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함
- 나. 목적에 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추가함(제1조)
- 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 라. 기금의 명칭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과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을 신설함(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호, 제5호)
- 마. 위원회 명칭을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원을 30명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함. 또한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을 신설함(제5조, 제8조, 제9조)
- 바.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자립 지원,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74호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보증료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① 보증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임차보증금의 상한 기준, 소득 기준 등 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
4. 지원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

③ 시장은 대상자 심사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보증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고,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원절차, 이의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여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조)
- 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함(제4조~제5조)
- 다. 기타 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075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1의3.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출산을 제고 및 양육환경에 놓여있는 가정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에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에서 주택을 임차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감하여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 제1호의2 신설)
- 나.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 제1호의3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076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제2항”으로,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를 “안전,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구·조사·홍보·교육 등”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마약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치료보호,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가족, 시민 대상 마약류 문제 정보제공, 단약지지 및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상담
2.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기반 연계 프로그램 등
3. 마약류 사용의 예방과 치료 중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4. 마약류 중독자 상담·치료·재활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약류 중독 관리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립병원이 우선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마약류중독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시장은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마약관리센터’를 도입하여 확산하는 마약류 피해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통해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제1조).
- 나.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제3조).
- 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제5조 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07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중 1. 일반직공무원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6.9%이상	1.6%이내
----	--------	---------	---------	---------	--------	--------

별표 4의 표 중 일반직 계란, 4급란, 4·5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연구직 계란, 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	--------	--	--	--	--	--

4급	259	154	19	8	70	8
4·5급	8	8				
5급 이하 소계	10,220					

연구직 계	410					
-------	-----	--	--	--	--	--

연구사	337					
-----	-----	--	--	--	--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반’ (4·5급)을 ‘동남권사업과’ (4급)로 재편하여 일반직 정원 조정 (4·5급 $\Delta 1 \rightarrow 4$ 급 +1)
- 나. 문화본부 박물관과의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및 ‘보이는 수장고’ 사무 관련 연구직 학예연구사 2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2명 감축
 - (일반직) 5급이하 $\Delta 2 \rightarrow$ (연구직) 연구사 +2다.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 등을 위해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상향 조정 (1.5% $\rightarrow$ 1.6%, +0.1%p)
 - 행정환경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나, 현재 전문경력관 정원 (1.46%, 157명)이 조례상 한계(1.5%, 160명)에 달함
 - 향후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전문경력관 추가 지정을 위해 8·9급 정원비율을 축소하고 전문경력관 정원 비율 상향 조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07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 을 “도시공간본부” 로 한다.

제5조제10호 중 “평가” 를 “평가, 갈등관리” 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사회협력 및 갈등관리” 를 “사회협력” 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도시계획국)” 을 “(도시공간본부)”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공간계획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 을 “도시개발” 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를 “서울아리수본부” 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를 “서울아리수본부” 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상수도사업본부” 를 “서울아리수본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시계획국” 을 “도시공간본부” 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한다.

- ③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한다.
- ④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한다.
- ⑥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한다.
- ⑦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상수도사업본부” 를 “서울아리수본부” 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가목 중 “도시계획국” 을 “도시공간본부” 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을 “서울아리수본부장” 으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을 “서울아리수본부장” 으로 한다.
- ⑪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수도사업본부” 를 “서울아리수본부” 로 한다.
- ⑫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을 “서울아리수본부장” 으로 한다.
- ⑬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중 “상수도사업본부장” 을 “서울아리수본부장” 으로 한다.
- ⑭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를 “서울아리수본부” 로 한다.
- ⑮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국장” 을 “기획조정실장” 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수립 중심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효율적 기획·조정을 위해 ‘도시계획국’ → 「도시공간본부」로 확대 개편
 - 도시공간계획 수립·조정·시행 등 도시공간 혁신 사무 신설
 -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무 이관(← 균형발전본부)
- 나.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아리수본부」 명칭 변경
 - 공급자 관점의 정책적·기능적 명칭에서 시민친화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수도 종합계획 ‘아리수2.0’의 성공적 추진 동력 확보
- 다. 그밖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실국간 사무 조정
 - 갈등관리 실효성 제고 위해 갈등관련 사무 이관 (행정국 → 기획조정실)

◆ 서울특별시조례 제9079호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7항”을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 밖의 지명”을 “지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철역 등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 중 “9명”을 “15명”으로, “5명 이상으로 하여야”를 “8명 이상 11명 이하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되며”를 “말고”로, “된다”를 “말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을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으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임기 중”을 “임기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제6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 제3항 중 “시·도 경계간 개재지명”을 “경계에 있는 구역의 지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까지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기존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전날 종료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3.6.11.)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명 등에 대한 의견제시 조항 정비 (제2조제2항)
- 나. 지명위원회 위원 수 확대 (제3조제1항)
- 다. 위원 해촉사유 규정 신설 (제5조)
-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 (제7조)
- 마. 의견 청취 범위 확대 및 자료 제출 내용 추가 (제9조)
- 바. 기타 자구 수정 등

◆ 서울특별시조례 제9080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각각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생활보조수당 및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을 “생활보조수당,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 및 제6항의 위문금”으로 한다.

⑥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문금의 지급근거 신설(제7조제6항)
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수정(제7조제7항)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0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비전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을”을 “정책특보, 비전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을”로, “정책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비전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은”을 “정책특보, 비전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은”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대변인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뉴미디어”를 “콘텐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홍보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서울브랜드담당관·민원담당관”을 “홍보담당관·콘텐츠담당관·서울브랜드담당관·민원담당관”으로, “뉴미디어담당관은”을 “콘텐츠담당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뉴미디어담당관”을 “콘텐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월간지 등 발행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제10호(중전의 제18호) 중 “‘찾아가는 서울시청’”를 “‘명예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뉴미디어담당관”을 “콘텐츠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시청방송의 운영

22. 시청 동영상 및 사진자료 확충 관리

제10조제5항제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정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기획관·신산업정책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창업정책과·뷰티패션산업과·미디어콘텐츠산업과·캠퍼스타운활성화과·전략산업기반과·국제교류과·금융투자과·바이오AI산업과”를 “경제일자리기획관·창조산업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창업정책과·대학창업과·금융투자과·첨단산업과·창조산업과·뷰티패션산업과·국제교류과·산업입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산업정책관”을 “창조산업기획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국제교류과장·금융투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뷰티패션산업과장·전략산업기반과장·바이오AI산업과장”을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대학창업과장·금융투자과장·창조산업과장·국제교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첨단산업과장·뷰티패션산업과장·산업입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산업정책관은 국제협력 및 신산업”을 “창조산업기획관은 창조산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7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략산업 선정 및 계획 수립 총괄

18. 로봇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행

제11조제7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2항, 제13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펀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관리

⑧ 대학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2. 대학 창업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청년 창업 및 대학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대학 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 창업기업 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 창업 사업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 서울 지역 대학, 민간기관, 해외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2항(중전의 제8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뷰티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2항(중전의 제8항)제6호(중전의 제5호) 중 “도시형제조업”을 “도시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도심제조업”을 “도시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도시형제조업”을 “도시제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캠퍼스타운 정책 협의회”를 “서울바이오허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을 “서울 AI 허브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창동·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6.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등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AI 서울 테크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10.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1. 양자 기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산업기반과장”을 “창조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략산업”을 “서울 창조산업”으로, “사항 총괄”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를 “웹툰·만화·애니메이션 지적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 확장현실(XR)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3.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운영
4. 게임·e스포츠 산업 육성 및 e스포츠 경기장 조성·운영
5. 1인미디어 허브 조성 및 산업 지원
6. 웹툰·만화·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조성
9. 창조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1조제11항제10호 중 “마곡산업단지 총괄 및 조정”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16호) 중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디지털미디어시티(DMC)”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AI산업과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을 “산업단지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창동·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등”을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AI양재 허브 육성”을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양재R&D 캠퍼스 조성”을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마곡산업단지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시설용지 토지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마곡산업단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 대외협력, 입주기업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3.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마곡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8.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1항 중 “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정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의료자원과·식품정책과·감염병연구센터·공공의료추진단”을 “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정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식품정책과·감염병연구센터·공공의료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과장·스마트건강과장·정신건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의료자원과장·식품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스마트건강과장·정신건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식품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15.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16.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17. 병상 수급관리 및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7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8. 코로나19 확진자 병상확보, 검사지원, 의료인력지원 및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9. 코로나19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1항 중 “총무과·인사과·인력개발과·자치행정과·시민협력과·대외협력과·남북협력과”를 “총무과·인사과·인력개발과·자치행정과·시민협력과·대외협력과·평화기반조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자치행정과장·시민협력과장·남북협력과장”을 “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자치행정과장·시민협력과장·평화기반조성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남북협력과장”을 “평화기반조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7.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8.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9.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0.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11.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북협력과장”을 “평화통일기반조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2호로 한다.

3. 평화·통일 안보 교육에 관한 사항
4.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 중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도시공간기획담당관·공공개발기획담당관·공공개발사업담당관”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공공개발기획담당관·공공개발사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수집·보급”을 “수집·보급, 활성화 방안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설사업 관련 평가업무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건설부실 근절대책 총괄(공공·민간)
18. 설계심의 이행관리 자문에 관한 사항

제21조의 제목 “(도시계획국에 두는 과)”를 “(도시공간본부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은”을 “도시공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공간전략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재창조과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시공간본부에 도시공간기획관·도시공간전략과·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과·도시재창조과·신속통합기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토지관리과를 둔다.
- ③ 도시공간기획관은 도시공간정책, 도시계획정책,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시관리정책, 도시계획시설 정책, 토지관리정책 등에 관하여 도시공간본부장을 보좌한다.
- ⑥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2.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용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과밀부담금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항권역 고도제한 기준 및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2. 생활권계획의 수립·조정, 운영·관리, 제도화에 관한 사항
 13. 보행일상권 조성기준 수립·조정 및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제21조제8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재창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8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3호) 중 “수도권정비계획”을 “역세권활성화 전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4호) 중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지생태도시 재창조 전략에 관한 사항
 3. 서울도심 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운용에 관한 사항
 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⑤ 도시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간 정책결정 및 도시공간계획 수립·조정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5. 도시발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자치구 도시공간계획의 수립·조정
 7. 입체·복합도시 조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 도시공간 사업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한강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천구역 및 주변부 도시공간 개발 기획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21조제7항(중전의 제6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계획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11.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1항(중전의 제9항) 제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보전에”를 “생태포럼에”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중전의 제19호) 중 “입체적 공간이용의”를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공간이용”으로 한다.

8. 학교(폐교, 이적지, 복합화, 미집행) 관리방안 수립 및 전략적 활용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 중 “균형발전기획관·균형발전정책과·도심재창조과·도시정비과·동북권사업과·서부권사업과·광화문광장사업과·동남권추진단을”을 “균형발전기획관·균형발전정책과·도시정비과·동남권사업과·동북권사업과·서부권사업과·광화문광장사업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동북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을 “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으로, “도심재창조과장·서부권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남권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을 “서부권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심재창조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도심 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도심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등포 경인로·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및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1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등에 관한 사항

8. 남산 친환경 이동수단 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정비과장”을 “동남권사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을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1. 동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민간부지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8.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41조제1항 중 “운영기획부·식품의약품부·질병연구부·물환경연구부·생활환경연구부·동물위생시험소·강남농수산물검사소·강북농수산물검사소 및 대기질통합분석센터”를 “운영기획부·식품의약품부·질병연구부·물환경연구부·생활환경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동물위생시험소·강남농수산물검사소·강북농수산물검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환경연구부장·생활환경연구부장”을 “물환경연구부장·생활환경연구부장·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은 지방환경연구관”을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한다.

제47조,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제48조, 제49조, 제50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50조의2를 제49조의2로 한다.

제47조(중전의 제50조)의 제목 “(대기질통합분석센터)”를 “(대기환경연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질분석센터장”을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제8호 중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을 “시민 및 학생들의 농업 체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도시농업전문가회 및 생활개선회”를 “도시농업전문가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을 “학교원 예프로그래밍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치유농업 육성 및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제54조제4항제3호 중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회”를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생활개선회·4-H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7호) 중 “그 밖에”를 “기타”로 한다.

7. 곤충산업활성화 및 관련 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8. 전통음식교육 및 농업·농촌 전통문화 계승, 소비자 농업에 관한 사항

9. 서울시 반려식물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0조”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0조”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73조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6항) 제1호 중 “상수도시설 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

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수도 배급수 운영 및 상수도관로 교체, 갱생, 신설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수질자동감시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도관망시설의 세척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용수시설(급수탑·소화전 등) 위탁업무
12. 음수대 및 저수조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

제75조제7항제2호 중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의 공사관리”를 “송수관·배수관·급수관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5호) 중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를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유지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취수·송수 유량계 및 구역유량계”를 “정수장·배수지 등 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누수사고의 복구·원인분석·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0.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12.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5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점검”을 “점검 및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수도 안전관리 총괄 및 점검
4.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79조제1항 중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정수와 및 정수시설과를, 구의·뚝도·영등포·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광암·구의·뚝도·영등포·암사아리수정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도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제8호, 제13호 및 제17호 서식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별지제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별지제4호서식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제6호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표 구분란 및 분임총괄관란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별지제74호서식, 별지제75호서식, 별지제76호서식, 별지제78호서식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별지제60의2호서식, 별지제63호서식, 별지제63의2호서식, 별지제65호서식, 별지제65의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표 관련부서란, 별표2 재난수습 주무부서표 수습주무부서란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별표 1의 의료·방역반의 관련부서란 기호(-) 중 “스마트건강과, 코로나19대응지원과”를 “스마트건강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뉴미디어담당관” 을 “콘텐츠담당관” 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 및 재편
- 나. 기구 명칭 변경 및 실국 간(내) 사무분장 정비 등
- 다.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규칙 제460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40	429	1,149	5,186	226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4,682	420	371	5,003	224
-------	--------	-------	-----	-----	-------	-----

같은 표 4급 소계란, 기술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59	154	19	8	70	8
-------	-----	-----	----	---	----	---

기술서기관	65	25			40	
-------	----	----	--	--	----	--

같은 표 4·5급 소계란,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급 소계	8	8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6	6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공업란, 간호란, 환경란, 시설란, 방재안전란, 방송통신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관란, 공업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공업·환경또는시설란 아래 공업·시설또는녹지란, 방재안전또는시설란 아래 방재안전또는공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급 소계	1,585	1,079	56	58	338	54
행정	746	543	52	26	77	48
사회복지	4	3			1	

공업	74	44			29	1
----	----	----	--	--	----	---

간호	22	16			6	
----	----	----	--	--	---	--

환경	12	11				1
----	----	----	--	--	--	---

시설	215	144			70	1
----	-----	-----	--	--	----	---

방재안전	2	2				
------	---	---	--	--	--	--

방송통신	22	19		1	2	
------	----	----	--	---	---	--

행정또는시설	70	56			11	3
--------	----	----	--	--	----	---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5	6			9	
-----------	----	---	--	--	---	--

공업또는시설	20	8	1	1	10	
--------	----	---	---	---	----	--

공업·시설또는복지	1				1	
-----------	---	--	--	--	---	--

방재안전또는 공업	1	1				
--------------	---	---	--	--	--	--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사회복지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간호란, 의료기술란, 환경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또는전산란, 전산또는시설란, 방재안전또는시설란, 통신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녹지또는시설란 아래 보건또는환경란을 삭제한다.

6급 소계	3,726	1,940	176	110	1,396	104
행정	1,440	887	147	44	287	75
세무	53	51	1			1
사회복지	27	24			3	
전산	101	75	3	3	17	3
공업	353	109	6	5	231	2
녹지	75	39			36	
간호	152	13			139	
의료기술	46	2		3	41	
환경	51	29		15	7	
시설	601	342	3	2	236	18
방송통신	59	35	3	2	19	

시설관리	42	11			31	
운전	40	22	1	1	16	

행정또는시설	47	45			2	
--------	----	----	--	--	---	--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4	10			14	
행정·공업또는시설	77	69			7	1

행정또는전산	10	7	1		2	
전산또는시설	4	4				

방재안전또는시설	18	16			2	
----------	----	----	--	--	---	--

통신운영	9	3		1	5	
------	---	---	--	---	---	--

사무운영	25	6	1	2	15	1
------	----	---	---	---	----	---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전산란, 방호란, 공업란, 녹지란, 간호란, 의료기술란, 보건란, 환경란, 시설란, 방재안전란, 방송통신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시설란, 방재안전또는공업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80	1,287	123	132	1,682	56
행정	1,221	649	88	59	383	42

세무	31	30	1			
----	----	----	---	--	--	--

전산	137	79	4	10	43	1
방호	33	8	4	4	17	
공업	407	22	6	10	367	2
녹지	92	12		2	78	
간호	140	7		3	130	
의료기술	41	2		1	38	
보건	16	14			2	
환경	34	6		16	12	
시설	542	230	3	5	296	8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60	34	3	4	19	
위생	6	1		2	3	
시설관리	4	2			2	
운전	53	11	1	2	39	
행정또는시설	34	31			2	1

방재안전또는공업	1				1	
전기운영	39	3			36	
기계운영	54	3	1		50	
사무운영	40	6	2	1	31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방호란, 공업란, 간호란, 환경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농림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097	141	38	58	859	1
행정	104	20	7	11	66	
방호	87	28	6	3	50	
공업	99	5	2	4	88	
간호	113				113	
환경	18	1			17	
방송통신	15	7		2	6	
시설관리	154			2	152	
운전	89	14	3	11	61	

전기운영	21	1			20	
기계운영	23	1		1	21	
농림운영	5			1	4	
사무운영	122	42	13	16	50	1

같은 표 9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시설관리란, 운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532	5	3	1	523	
행정	16	1	1		14	
공업	53	1			52	
시설관리	331	1		1	329	
운전	6				6	

같은 표 연구직 계란, 연구사 소계란, 학예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410	28		199	183	
연구사 소계	337	22		157	158	
학예연구	101	17		2	82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새로운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총 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반’ (4·5급)을 ‘동남권사업과’ (4급)로 재편하여 일반직 정원 조정 (4·5급 △1 → 4급 +1)

나. 문화본부 박물관과의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및 ‘보이는 수장고’ 사무 관련 연구직 학예연구사 2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2명 감축

다.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직급 간 조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606호

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일본어 투 표현, 만 나이, 현행화가 필요한 인용조문 및 부서명칭 등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우리 시 규칙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별표 1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란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때에 한하여” 를 “때만” 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하여” 를 각각 “한정하여” 로 한다.

별표의 신고내용란 중 “(제2조제1항제1호)” 를 “(제3조제1항제1호)” 로 하고, “(제2조제1항제3호)” 를 “(제3조제1항제3호)” 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를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한하여” 를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쪽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쪽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우에 한하여” 를 “경우에만”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54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제5조제1호나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5조제1호나목을 제외한 지역

제5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제5조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업지역 제12조제2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별표 1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의 비고의 제1호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별표 23 제1호가목의 주 중 “경우에 한하여” 를 “경우에만” 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한하여” 를 “경우에만” 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직담당관)” 을 각각 “(홍보담당관)”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조직담당관” 을 “홍보담당관”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조직담당관” 을 “홍보담당관” 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조직담당관)” 을 “(홍보담당관)” 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조직담당관(종합자료관장)” 을 “홍보담당관” 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조직담당관(종합자료관장)” 을 “홍보담당관”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조직담당관(종합자료관장)” 을 “홍보담당관” 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경우에 한하여” 를 “경우에만” 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후단 중 “경우에 한하여” 를 “경우에만”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6조 중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시스템’ ” 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단서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4호 중 “경우에 한하여” 를 “경우에만” 으로 한다.

별표 5의 컬러전광판(대형)의 기본료란 나목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만 65세” 를 “65세” 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 중 “만 14세” 를 “14세” 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만 8세” 를 “8세” 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연구지원부장” 을 “운영기획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구지원부장” 을 “운영기획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연구지원부장” 을 “운영기획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구지원부장” 을 “운영기획부장” 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재개발과 및 구조구급교육센터” 를 “소방교육훈련센터” 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제5호”를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4조제3항”을 “제4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급병가”를 “서울특별시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3조제2항”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으로 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를 “법 제30조”로, “및 영 제60조”를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정연구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는”을 “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센터”를 “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장애인인권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에서 규정된”을 “제12조제1항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5조제1호”를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2호”를 “제16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제3호에 따른 멸실”을 “제16조제3호에 따른 멸실 및 공공성 훼손”으로, “따른 그”를 “따른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제5호에 따른 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우리 시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 만 나이, 현행화가 필요한 인용조문 및 부서 명칭 등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우리 시 규칙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일본어 투 표현 "한하여" 정비 : 규칙 28개(조문 45건)

나. 만 나이 정비 : 규칙 3개(조문 3건)

다. 상위법령 또는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 현행화 : 규칙 10개(조문 40건)

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현행화 : 규칙 4개(조문 14건)

마. 그 밖에 경미한 오기 수정 : 규칙 4개(조문 5건)

◆ 서울특별시규칙 제4607호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구분란 중 “조례 제5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융자”를 “조례 제5조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융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개정(2022. 12. 30.)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이 추가(제5조제1호 신설)됨에 따라,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표에 조례 제5조제1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별표에 조례 제5조제1호의 사업 추가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53호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2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구청장이 발령하는 민방위 경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보전달"이란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 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경보를 말한다.
4.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사이렌장비·동시전파장비·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 민방위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5. "중앙경보통제소"란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 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 경보통제소를 말한다.

제2장 지휘체계 및 임무

제3조(설치 및 조직) ① 민방위 경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통제소"라 한다)를 두고,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통제소장"이라 한다)은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경보팀장이 맡는다.

② 통제소에는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달과 경보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상황실(이하 "경보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경보상황반과 경보운영반을 두어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③ 경보상황반에는 상황조장과 상황조원을 배치한다.

제4조(지휘체계) ① 비상기획관은 통제소를 지휘·감독한다.

② 민방위담당관은 통제소 운영에 관하여 비상기획관을 보좌한다.

③ 통제소장은 통제소 직원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며, 통제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보상황반의 업무는 해당 근무일 상황조장이, 경보운영반 업무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황조장은 상황조원에 대한 개별임무를 지정하고, 유사시 임무완수에 차질이 없도록 경보발령·전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황조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경보운영반은 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경보상황실 행정지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통제소장)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보상황반과 경보운영반 업무 및 경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2. 경보상황실이 설치된 시설 내 대외업무 수행
3. 그 밖에 통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의 조정

제6조(상황조장) 상황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보상황실 내에서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운영 총괄
2. 상황조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개별임무 지정 및 기록·관리
3. 상황조원에 대한 경보장비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지도
4. 시설장비의 점검기록부, 상황근무일지 등 업무 인계·인수
5. 그 밖에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의 조정

제7조(상황조원) 상황조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전달
2. 언제든지 경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통제소 내의 유선·위성 경보장비, 방송장비, 직통전화장치, 무정전전원장치 그 밖에 부대설비의 시험·점검·운영 등 통제소 장비의 책임관리
3.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별표 5, 별표 7의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및 해명방송 문안 비치·숙지
4. 통제소 출입통제 및 보안유지
5. 경보장비에 대한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6. 그 밖에 민방위 경보 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경보운영반) 경보운영반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자체 규정·매뉴얼 정비 및 업무계획 수립
2. 경보시설 점검, 사이렌장비 신·증설
3. 시·구·동 경보요원 교육
4. 통제소 행정지원, 물품구매 등 일반사무
5. 통제소가 속한 청사내 업무협조 등 통제소 대외업무
6. 그 밖에 경보상황실 운영 이외의 통제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경보전달체계

제9조(선조치 후보고)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수도방위사령관(예하 부대장 포함)으로부터 민방공 경보발령이 요청되면 상황조장(상황조장 부재시에는 차상급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제소장은 그 결과를 중앙경보통제소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황조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보발령 사전예고접수 시 조치) 상황조장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통제장비 정상 가동상태 유지
3. 수도권방위사령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상황유지
4. 비상지휘·보고체계 유지
5.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제11조(민방공 경보 발령) ① 수도권방위사령관 등 지역 군부대장은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시장, 구청장 또는 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2조(경보발령 시 조치) 상황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을 요청받으면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가 경보발령 대상지역일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경보발령 지역이지만 중앙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미울림 사이렌장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1.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
2.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발령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중앙경보통제소에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별표 3에 따른 경보방송 및 별표 4에 따른 TV 자막방송 요청
3.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실시(단, 중앙경보통제소 실시 시에는 생략)
4. 동시전파장비를 이용하여 경보사이렌 음성방송 실시
5.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별표 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직통전화, 단체문자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6. 수도권방위사령부 등 지역 군부대와 긴밀한 상황전파체계 유지
7. 통제소 직원 전원 비상소집

제13조(보고체계) ① 중앙경보통제소로부터 민방공 경보가 발령되면 통제소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휘체계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요청으로 국지적인 민방공 경보가 발령되면 통제소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휘체계에 따라 시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보 오보 시 조치) 통제소장은 경보발령 후 그 경보가 오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경보발령을 요청한 지역군부대장에게 경보발령 오보 경위 확인
2. 경보전달기관에 경보발령 오보사실 통보
3.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해명방송 요청이 있을 때는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별표 7에서 정한 해명방송 문안에 따라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
4. 해명방송 실시 후 즉시 지휘체계에 따라 시장 및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

제15조(재난 경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경보가 통지되면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통제소장에게 사이렌장비를 작동하여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재난 시에도 시장 또는 구청장은 통제소장에게 사이렌장비를 활용한 음성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대피요령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 경보 보고 등) 재난 경보에 따른 보고, 오보 시의 조치 등은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통제소 운영 및 복무

제17조(경보상황실 운영 등) ① 경보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② 경보상황실은 각조 4명 4개조로 편성하며 주간, 야간 2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질병이나 인사이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상황조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각 조 3명으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경보상황실 근무자(이하 “상황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상황근무자 근무시간 중 주간근무시 11:00~13:00 중 1시간, 야간근무시 01:00~05:00 중 2시간은 휴계시간으로 하되, 휴계시간 중이라도 제18조의 비상소집 사유 발생 시 10분 이내에 정위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황근무자의 휴계시간은 제4조의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상황근무자는 근무시간 20분전에 출근하여 직전 근무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인계·인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합동근무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반영한다.

1. 경보발령 유·무 및 교대근무 시까지의 상황
2. 경보시설의 이상유무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3. 상황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⑤ 경보운영반의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⑥ 통제소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매월 별도의 근무명령에 따라 정하되, 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다.

⑦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8조(비상소집 및 근무) ①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제소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한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소 내에서 교대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앙정보통제소장 또는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았을 때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3.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4. 그 밖에 비상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시 모든 상황근무자에게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1. 유선·위성망 운영점검 및 시험정보 전달점검
2. 경보방송 점검
3. 경보사이렌 장비 특별점검
4. 무정전전원장치 가동 상태 점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근무자 복무) ① 통제소 직원은 별표에 정한 근무수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고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통제소 직원은 통제소가 소재한 청사 내에서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가 근무시간 등을 변경할 때에는 통제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출입자 통제 및 보안대책)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소 운영상 부득이하게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자통제부에 그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통제소장은 통제소를 상시 출입하는 민간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신원대장을 관리한다.

③ 통제소장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평균 주 1회 이상 통제소를 출입하는 상시근무자에게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 또는 평균 주 1회 미만 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에게 임시출입증을 발급하며, 임시출입증은 일일단위로 지급 및 반납한다.

제21조(시설물의 주·야간 경계 및 순찰) ① 통제소가 속한 청사의 주·야간 순찰은 청원경찰이 실시한다.

② 순찰함은 주요지점에 설치하고, 순찰시계 등을 활용한다.

③ 통제소장은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장비점검 및 운영관리 등

제22조(장비관리 등)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② 통제소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 통제소장은 통제소 내의 경보시설에 대해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23조(장비점검) 통제소장은 경보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특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경보망 점검) ① 상황조장은 통제소 내의 경보통제시스템과 경보사이렌 장비간의 경보망 회선점검과 경보시험을 매일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1호 및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조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망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정상가동시까지 대체 경보전달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근무 상황조장과 경보운영반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유관기관의 협조)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운영·관리와 민방위 경보 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수도방위사령부, 지역군부대, 경찰, 소방, KT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이렌장비 신규설치 및 장소 변경) ①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이렌장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신 주거단지가 조성된 경우
2. 주변여건의 변화로 가청지역의 범위가 축소 또는 확대된 경우
3. 사이렌장비가 설치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그 밖에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이렌장비의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이렌장비의 신규설치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검토 및 시공은 통제소장이 행한다.

제27조(다른 규정의 적용)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수칙

□ **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우리 근무자는 천만 서울시민의 불침번임을 자각하고 시대적 사명감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민방위 기수로서
-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성실, 충직하게 근무한다.
 1.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요원은 지휘계통과 통제소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근무교대자는 상황 및 각종비품의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3. 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를 수시 점검하여 완벽한 경보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통제소장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무자는 근무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6. 근무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7. 근무자는 장비 및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면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상황실 근무일지

			결 재

20 년 월 일 요일

근 무 자	구 분	주 간 (09:00 ~ 18:00)		야 간 (18:00 ~ 익일 09:00)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조 장				
	조원 1				
	조원 2				
	조원 3				

[전체시스템 현황]

구분	경보통제대 (1,2)	주제어시스템	운용관리시스 템	DB시스템	통합예비시스템
상태					
구분	동시전파장비				프로그램제어장 치(PLC)
	서 버	IP 교환기	네트워크	음성변환장치	
상태					

[개별시스템 운영 및 관리상태]

○ 경보통제대

- 단말점검

사이렌장비		경보통제대 (1,2)	주제어장비			음성 (T/D)	점검자
번호	명 칭		스피커 테스트	액 프 테스트	디 지 털 제어설정		

(별지 제1호서식)

2면

- 시험(혜제)발령

시 간	발령원	운영단말	응답단말	이 상 단 말 명	상 태	비 고

○ 동시전파장비 및 재난안전통신망

시 간	발령원	방 송 종 류	이 상 유 무	상 태	비 고

○ 운용관리시스템

- 운영이력

구 분	시험경보발령조회	실제경보발령조회	장비이력통계	관리자로그인
상 태				
비 고				

- 정보통신망

구 분		장 애 내 역	상 태	비 고
중앙경보통제소				
유 선	디지털회선			
	음성회선(T/D)			
위 성	DATA			
	음 성			

- 네트워크 장비

구 분		라우터	스위칭허브	터미널서버	방화벽	POE스위치	이중화제어반
상 태	주						
	예비						
비 고							

(별지 제1호서식)

3면

○ 주제어시스템

구 분	장 애 내 역	상 태	비 고
주 장비 감시			
무인단말장비 감시			
디지털포인트 감시			
아날로그포인트 감시			
버튼 카·기타 등			
프린터(1,2) 감시			
인증키 배분			

○ 정보표시반

구 분	장 애 내 역	상 태	비 고
전 광 판			

○ 무정전전원장치

구 분	1 호 기	2 호 기	비 고
출력(전압/전류)			
연 결 단 자			

[주요기관 직통전화]

구 분	국 가 정보원	시 경	중 부 경찰서	총 무 파출소	56사 219연대	KT 강북 운용본부	가로등 관제센터
점 검 시 간							

[특기사항]

(별지 제2호서식)

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일지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유선 장애 일지

20 년 월 일 요일

						결 재

전용회선 번호	단말기명	상 태	전화국 의뢰			조치사항
			신고시간 복구시간	신고자	접수자	

(별지 제4호서식)

출입자 통제부

[illegible]

[별지 제5호서식]

단말점검카드

단 말 점 검 카 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점검결과	점검결과	점검결과	점검결과
1. 주요기능 상태 가. 단말제어장치(MCU) 동작 상태 나. 수동올림조작반(SEI) 동작 상태 다. 데이터통신장치(DSU) 동작 상태 라. 직류전원공급장치(PSU) 동작 상태					
2. 유선 및 위성 시험 경보발령 기능 가. 유선을 이용한 경보전달 상태 나. 위성을 이용한 경보전달 상태 다. 경보별 사이렌 울림 상태 라. 음성방송 수신 상태 마. 경보별 울림결과 확인					
3. 앰프 및 스피커 동작 상태 가. 앰프, 스피커 시험기능 나. 앰프출력 상태 다. 앰프사용 설정여부					
4. 각종 환경감시 기능 가. 온도, 습도, 도어 등 각종센서 동작 상태 나. 환풍기 동작상태					
5. 경보사이렌 관리 기능 가. 비밀번호 설정여부 나. 키패드 및 점검키 기능 다. 전화기 기능 라. 이벤트 등 기록 관리 기능					
6. 각종 선로 상태 가. 전원선로 상태 나. 전용회선 수신레벨, 전송선로 상태 다. 접지선로 및 지선상태					
7. 정류기 및 축전지 상태 가. 정류기 상태 나. 상전 OFF시 축전지 동작 상태 다. 축전지 전압, 충전케이블 상태					
8. 특기사항					
점검일자	통제소 담당자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경보상황실 인계·인수부

20 년 월 일 (요일)

인계자	인수자

☐ 경보장비

구 분	이상유무	조치사항	비 고
정보지령대			
동시전파대			
운용관리대			
정보사이렌			

☐ 경보발령 시험결과

구 분	이상단말 및 횟수		비 고
자체시험			
중앙	1중앙		
통제소	2중앙		

☐ 경보발령 훈련결과

구 분 (훈련종류)	훈련접수		경보발령		비 고
	접수시간	요청자	발령시간	발령지역	

☐ 정보통신망

항목	구분	이상장비명	조치사항	비 고
유 선	DATA회선			
	TD회선			
위 성	DATA			
	음성			

☐ 유관기관 직통회선 이상유무

구 분	시 경	국정원	수도방위 사령부	중앙 전화국	가로등 관제센터	중부 경찰서	충무 파출소	56사 218연대

☐ 경보사이렌 작업(교체, 수리, 회선작업)

단 말 명	작 업 내 용	비 고

☐ 특기사항(출입자, 지시사항 등)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발령과 전파를 위해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2023년 10월 19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비상기획관 소속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이 이관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에 포함된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성 및 임무, 경보발령 시 조치사항 등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훈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비상기획관의 지휘·감독하에 두고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은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경보팀장이 맡도록 하는 등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및 지휘체계 정비(제3조 및 제4조)
- 나. 민방위 경보를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통제소장, 경보상황반(상황조장 및 상황조원), 경보운영반의 구성 및 임무 부여(제4조에서 제8조까지)
- 다.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의 발령절차, 조치사항, 보고절차 및 오보시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 경보발령 및 전달체계 확립 (제9조에서 제16조까지)
- 라.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중단없이 운영하고 상황근무자를 각조 4명 4개조로 편성하여 주간, 야간 2교대 근무를 실시하도록 함.(제17조)
- 마. 국가중요시설인 민방위경보통제소 출입자 통제 및 보안대책 마련하고 청원경찰이 주·야간 경계 및 순찰토록 함.(제20조 및 제21조)
- 바. 경보시설과 통신망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사이렌장비 신규설치 및 장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기술검토 및 시공은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 행하도록 함.(제22조에서 제26조까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625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분장 조정 및 직렬 변경 사항 반영

－ (시민건강국) 화학물질, 공중위생업소, 유통 위생용품 안전 관리 등

‘환경보건’ 관련 업무 이관 (보건의료정책과 → 감염병관리과)

－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내 ‘한강여가사업부장’ 직위의 직렬 조정

(기술서기관 → 서기관기술서기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중위생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수돗물 제외)
13.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제85조제1항 중 “공원부장·시설부장·한강여가사업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강전략사업 부장은 지방행정서기관”을 “공원부장·시설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강전략사업부장·한강여가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 ③ (생략)	제17조의2(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9.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u>	<삭제>
<u>10. 공중위생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삭제>
<u>11.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수돗물 제외)</u>	<삭제>
<u>12.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u>	<삭제>
<u>13.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u>	<삭제>
<u>14. ~ 17. (생략)</u>	<u>9. ~ 12. (현행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u>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u>10.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u>
<신설>	<u>11. 공중위생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신설>	<u>12.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수돗물 제외)</u>
<신설>	<u>13.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u>
<신설>	<u>14.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u>
⑧ ~ ⑪ (생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에 한강사업추진단·총무부·운영부·공원부·시 설부·한강사업총괄부·한강전략사업부·한강 여가사업부를 두고, 한강사업추진단장은 지방 부이사관으로, 총무부장·운영부장·한강사업 총괄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u>공원부장·시설부 장·한강여가사업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강전략사업부장은 지방행정서기관 또는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제85조(하부조직) ① ----- ----- ----- ----- ----- ----- ----- <u>공 원부장·시설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강 전략사업부장·한강여가사업부장은 지방서기 관</u> -----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현 행 : ’ 24.1.1. 시행 기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62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정원 운용을 위한 정원의 직렬 조정, 이관 등

－ (본 청) 운전8급 △1

－ (사업소)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운전8급 +1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39	429	1,148	5,187	226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4,681	420	371	5,004	224
-------	--------	-------	-----	-----	-------	-----

같은 표 기술서기관란, 서기관·기술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서기관	64	25			39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79	57			18	4

같은 표 8급 소계란, 운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097	140	38	58	860	1
운전	89	13	3	11	6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 ·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 · 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4,740	429	1,149	5,186	226	총 계	11,730	4,739	429	1,149	5,187	226
(생 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700	4,682	420	371	5,003	224	일반직 계	10,700	4,681	420	371	5,004	224
(생 략)							(현행과 같음)						
4급 소계	259	154	19	8	70	8	4급 소계	259	154	19	8	70	8
(생 략)							(현행과 같음)						
기술서기관	65	25			40		기술서기관	64	25			39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78	57			17	4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79	57			18	4
(생 략)							(현행과 같음)						
8급 소계	1,097	141	38	58	859	1	8급 소계	1,097	140	38	58	860	1
(생 략)							(현행과 같음)						
운전	89	14	3	11	61		운전	89	13	3	11	62	
(생 략)							(현행과 같음)						
※ 현 행 : '24.1.1.자 시행 기준													

구 고 시

◆ 서초구고시 제2023-181호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토지보상)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1971. 8. 6.)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4-156(2014. 4. 24.)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서울시고시 제2021-405(2021. 7. 29.)호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번지 일대의 청계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3-2771호(2023. 12. 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9)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2) 명 칭: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
- 3) 내 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25,0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변 경 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2) 변 경 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4년 5월 13일까지
- 3) 변경사유: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지적(현황, 경계)측량 및 보상절차 이행 불가로 등록사항 정정완료시까지 사업기간 변경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참조

아. 고시방법: 관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2155-68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청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변경전	변경후							
	계		225,124	211,522	25,000						
1	원지동 산4-13	임	225,124	211,522	2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순*	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조은*	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중*	1/10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정 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898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정)

서울시보 제3936호(그2)(2023. 12. 14.)에 게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898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정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포안을 정정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조례 제898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한다.
 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
- 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나. 실제로 집회가 개최하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여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 개시를 제한하고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하여 집회 및 시위 문화를 개선하고 시민들을 무분별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보호하고자 관련 조항들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함(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 나. 법 제8조 제8호에서 정한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써 정함(제11조의2 추가)
- 다. 집회현수막 설치 시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3제1호 신설)
- 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한 집회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내용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도록 함(제11조의3제2호 신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